

변경 대비표

1. 대상 펀드 : 신영퇴직연금배당주식증권투자신탁(주식)
2. 변경 대상 : 일괄신고서(투자설명서, 간이투자설명서)
3. 변경 사유 :

구분	주요 변경 사항
일괄신고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투자위험등급 변경(3 → 2등급) -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갱신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-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사항 반영(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 개정)

4. 효력 발생(예정)일 : 2025년 4월 17일

5. 세부 변경 사항 :

◆ 일괄신고서(투자설명서, 간이투자설명서)

항목	정정 전	정정 후
간이투자설명서	투자위험등급 3등급(다소높은위험) 신영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	투자위험등급 2등급(높은위험) 신영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.
간이투자설명서 [요약정보]-투자비용/ 투자실적추이	<생략>	<u>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</u>
제2부 5. 운용전문인 력에 관한 사항 가. 운용전문인력 나. 최근 3년간 운용 전문인력 변동 내역	<생략>	<u>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</u>
제2부 10. 집합투자기 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	신영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운용성과에 따 른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고려하여, 6등급 중 3 등급(다소 높은 위험) 으로 분류하였습니다.(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(97.5% VaR 모형 사 용) : 29.90%) <후략>	신영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운용성과에 따 른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고려하여, 6등급 중 2 등급(높은 위험) 으로 분류하였습니다.(일간 수 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(97.5% VaR 모형 사 용) : 31.70%) <후략>
제2부 13. 보수 및 수 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 과되는 보수 및 비용	<생략>	<u>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</u>
제2부 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	(1)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- 별도의 소득과 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<생략> <u>다만,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.</u>	(1)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- 별도의 소득과 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<생략> <u>다만, 2025년 1월 1일 이후 집합투자기 구에서 발생하여 외국원천징수되는 외국납부세액 은 투자신탁 단계에서 별도의 환급 절차가 없으 며, 원천징수의무자(판매회사 등)가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기구 이익을 지급하는 시점에 수익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수익자별 외국납부세액 공제금 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합니다.</u>

	<p><u>[그림]</u> 환급세액 = 외국납부세액 X 환급비율* * 환급비율 : (과세대상소득금액/국외원천과세대 상소득금액) 단, '환급비율>1' 이면 1, '환급비율<0' 이면 0으 로 함</p>	<p><u><삭제></u></p>
<p>제3부 1. 재무정보 2. 연도별 설정 및 환 매현황 3. 집합투자기구의 운 용실적</p>	<p><u><생략></u></p>	<p><u>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</u></p>
<p>제4부 1. 집합투자업 자에 관한 사항 가. 회사개요 다. 최근 2개 사업연 도 요약 재무내용 라. 운용자산 규모</p>	<p><u><생략></u></p>	<p><u>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</u></p>